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호로 2022년 10월 2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나. 사무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다. 사무국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라.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마.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 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규칙안의 목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안 제정의 목적과 사무국 수행 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으로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둠을 규정함.
- 안 제4조, 안 제5조는 각각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으로 직급 및 정수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과 해당 사무분장에 대해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관련, 팀 신설 등의 개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24> [제6조에서 이동 <2022.1.6.>]